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2월 2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증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증원 (안 제2조): 증 130명

- 본청 · 교육지원청 ·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증원  
: 증 105명(6,648명 → 6,753명)
-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 
: 증 25명(460명 → 485명)

나.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총계 증원: 증 130명 (7,113명 → 7,243명)
  - 일반직 정원 증원: 증 105명 (6,650명 → 6,755명)
  - 5급 이하 소계: 증 105명 (6,569명 → 6,674명)
  - 특정직 정원 증원: 증 25명 (460명 → 485명)
  - 5급상당 이하 장학관 ·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· 교육연구사  
: 증 25명 (410명 → 435명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[별첨3]

: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 [별첨 2]

다. 협의: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

라. 기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: [별첨 1]
- 입법예고(2018. 1.19. ~ 1.26.) 결과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113” 을 “7,243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6,648” 을 “6,753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460” 을 “485” 로 한다.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 계	7,243				
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6,755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
4·5급	6		6		
5급 이하 소계	6,674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485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35				

<비고> 제2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,113</u> 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청·교육지원청·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<u>6,648명</u></p> <p>3. 교육전문직원 정원 <u>460명</u></p> <p>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7,243</u> 명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</p> <p>-- <u>6,753명</u></p> <p>3. ----- <u>485명</u></p> <p>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</th> <th>교육 지원청</th> <th>공립의 각급 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7,113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6,650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총 계	<u>7,113</u>					정무직 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<u>6,650</u>					2·3급	1		1			3급	9		9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시의회 사무처</th> <th>본청</th> <th>교육 지원청</th> <th>공립의 각급 학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7,243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교육감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6,755</u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총 계	<u>7,243</u>					정무직 계	1					교육감	1		1			일반직 계	<u>6,755</u>					2·3급	1		1			3급	9		9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7,11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6,65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9	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7,243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육감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6,75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9	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3·4급	3		3			3·4급	3		3		
4급	39		28	11		4급	39		28	11	
4·5급	6		6			4·5급	6		6		
5급 이하 소계	<b>6,569</b>					5급 이하 소계	<b>6,674</b>				
전문경력관 소계	9					전문경력관 소계	9				
연구사 소계	14					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2					별정직 계	2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2				
특정직 계	<b>460</b>					특정직 계	<b>485</b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50		28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원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	<b>410</b>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	<b>435</b>				
<p>&lt;비고&gt; 제2조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본청의 지방서기관 1명으로 한다.</p>						<p>&lt;비고&gt; (현행과 같음)</p>					

【별첨 2】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2018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원이 증가 통보되어 이를 정원 조례에 130명 증원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

2. 비용추계의 전제

일반직 ‘5급 이하’ 105명, 특정직 ‘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’ 25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 인건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-						
세입		-						
		소계(a)						
세출		인건비	8,092,807	10,248,802	10,702,824	11,176,959	11,672,098	51,893,490
		소계(b)	8,092,807	10,248,802	10,702,824	11,176,959	11,672,098	51,893,490
□ 총 비용(a-b)			8,092,807	10,248,802	10,702,824	11,176,959	11,672,098	51,893,49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8,092,807	10,248,802	10,702,824	11,176,959	11,672,098	51,893,490
시비	지방세수입							
	세외수입							
	지방채 등							
민간								
기타								
합계			8,092,807	10,248,802	10,702,824	11,176,959	11,672,098	51,893,490

5. 덧붙이는 의견: 없음

6. 작성자: 황혜은 주무관 (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)

## I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정원 변동내역

- 일반직 5급 이하: 105명 증원
-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: 25명 증원

### 2. 비용소요 추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소요비용	세부내역
1차년도 (2018년)	8,092,807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8,092,807천원 - 일반직: $68,878 \times 105\text{명} = 7,232,190\text{천원}$ - 특정직: $103,274\text{천원} \times 25\text{명} \times 4/12 = 860,617\text{천원}$
2차년도 (2019년)	10,248,802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10,248,802천원 - 일반직: $68,878 \times 105\text{명} = 7,232,190\text{천원}$ - 특정직: $103,274\text{천원} \times 25\text{명} = 2,581,850\text{천원}$ - $9,814,040\text{천원} \times 104.43\% = 10,248,802\text{천원}$
3차년도 (2020년)	10,702,824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$10,248,802\text{천원} \times 104.43\% = 10,702,824\text{천원}$
4차년도 (2021년)	11,176,959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$10,702,824\text{천원} \times 104.43\% = 11,176,959\text{천원}$
5차년도 (2022년)	11,672,098	○ 인건비 추가 소요액: $11,176,959\text{천원} \times 104.43\% = 11,672,098\text{천원}$
계	51,893,490	

#### ※ 비용추계 방법

- 1차년도: 2018년 일반직 인건비단가 68,878천원 × 105명

2018년 특정직 인건비단가 103,274천원 × 25명

- 2차년도~5차년도

: 2018년도 처우개선을 4.43%(호봉승급분 1.83% + 공무원 보수인상률 2.6%) 적용



## 【별첨 3】

### 관계법규

#### 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7.12.29.] [대통령령 제28521호, 2017.12.29., 타법개정]

**제2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5.8., 2014.6.11., 2016.12.13.>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####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5.8., 2013.12.4.>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8.>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4.>